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76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김영호 · 박 정 · 박지원
김예지 · 백선희 · 윤종균
김종민 · 이주희 · 이용우
서영석 · 서미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콘텐츠제작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 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비용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다.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률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콘텐츠제작자가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함(제12조의4 신설).
- 마.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
· 재해 관련 보험료

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 한다)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장애인접근조정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휠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촬영 세트장 내 이동 보조 및 동선 확인
2. 장애인배우의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휴게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관리

3. 장애인배우와 콘텐츠제작자 등과 연출과정의 의사 및 의도 전달 등 소통 지원
 4. 장애인배우의 촬영 시 심리적 안정 지원
 5. 장애인배우의 장애 유형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
 6. 위기 상황 발생 시 장애인배우의 안전 확보 등 전문적 조치
 7. 그 밖에 장애인배우의 촬영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① 국가는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비용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장애인배우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드라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콘텐츠제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 등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추천 또는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의 기준·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원의 확보) ①·② (생략) <u><신 설></u>	제8조(재원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배우 및 장애인 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 <u>제12조의2(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 한다)에게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u> ② 장애인 접근조정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신 설></u>	

<신 설>

1. 휠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촬영 세트장 내 이동 보조 및
동선 확인
 2. 장애인배우의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휴게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관리
 3. 장애인배우와 콘텐츠제작자
등과 연출과정의 의사 및 의
도 전달 등 소통 지원
 4. 장애인배우의 촬영 시 심리
적 안정 지원
 5. 장애인배우의 장애 유형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
전 대비
 6. 위기 상황 발생 시 장애인배
우의 안전 확보 등 전문적 조
치
 7. 그 밖에 장애인배우의 촬영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①
국가는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
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
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

<신 설>

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비용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장애인배우의 정보 관

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드라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콘텐츠제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 등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신 설>

절차, 추천 또는 지원의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콘텐츠제작자가 드
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
거나 일상적 활동 · 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
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등 인
센티브 부여의 기준 · 방법 ·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